E - 131 - 2012

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 방지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ㅇ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희 교수
- 제·개정 경과
 - 2012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ㅇ 관련 규격 및 자료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(전자파에 의한 기계·설비의 오작동방지)
- KS C IEC 60947-1(2009.12.31,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-제1부:일반규정)
- IEC 60947-3 Ed. 3.1 b(2012.04.27, Low-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Part 3: Switches, disconnectors, switch-disconnectors and fuse-combination units
- KS C IEC 61000 시리즈 (전기자기적합성(EMC))
- KOSHA GUIDE E-6-2012 (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E-18-2012 (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2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131 - 2012

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(전자파에 의한 기계·설비의 오작동 방지)에 의거, 전자파에 의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 범위

- (1) 이 지침은 교류 1,000 V 이하 또는 직류 1,500 V 이하의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(이하, 단로기·단로용 스위치·퓨즈-결합장치를 말한다.)에 적용한다.
- (2)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3. 용어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개폐장치(Switchgear)"란 개폐기기 및 그것과 관련된 제어·계측·보호 및 조정 기기와의 조합 또한 그러한 장치와 그것에 상호 접속된 기기·부속물·외함 및 지지 구조물의 조립을 말하는 일반 용어로, 원칙적으로 발전·송전·배전 및 전기에 너지 변환과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장치를 말한다.
 - (나) "제어장치(Controlgear)"란 개폐기기 및 그것과 관련된 제어·계측·보호 및 조정 기기와의 조합 또한 그러한 장치와 그것에 상호 접속된 기기·부속물·외함 및 지 지 구조물의 조립을 말하는 일반 용어로, 원칙적으로 전기에너지 소비 기기의 제어에 사용하고자 하는 장치를 말한다.

E - 131 - 2012

- (다) "단로기 (Disconnector)"란 개로위치에서 이격기능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계식 개폐기기를 말한다.
- (라) "단로용 스위치 (Switch-disconnector)"란 개로위치에서 단로기에 대한 규정된 이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.
- (마) "퓨즈-결합 장치 (fuse-combination unit)"란 기계식 개폐기기와 하나 또는 그이상의 퓨즈를 하나의 합성장치 안에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조립해 놓은 장치를 말한다.
- (바) "외함(Enclosure)"이란 어떤 외부 영향에 대해서 규정된 기기 보호등급을 가지 면서 또 통전부와 가동부에의 접근이나 접촉에 대한 규정된 보호등급을 갖는 부분을 말한다.
- (사) "포트(Port)"란 지정된 장치의 외부 전자계 환경과의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말하며, 외함 포트·기능접지포트·신호포트·전원포트 등이 있다.(<그림 1> 참조) 주) 일부 기준에서는 이를 단자쌍이라고 한다.

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E - 131 - 2012

4. 전기자기에 의한 오작동방지 시험

4.1 일반 사항

- 이 지침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두종류의 환경조건으로 구분한다.
- (1) 환경 A: 높은 방해원을 포함하는 비공공성 또는 산업용의 저압 회로망/지역/설비에 관련된 환경
 - 주) 1 : 환경A는 KS C CISPR 11(산업·과학·의료용(ISM) 기기 무선 주파수 방해특성 측정한계값 및 방법) 및 KS C CISPR 22(정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측정방법 및 한계값)의 기기 클래스 A에 상응한다.
 - 주) 2 : 환경A 기기는 환경B에 설치되었을 때 전기자기 방해를 야기할 수 있다
- (2) 환경B : 주거용, 상업용 및 경공업 지역/설비와 같이 공공의 저압 회로망에 관련 된 환경. 아크 용접기와 같은 큰 방해원은 이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다.
 - 주) 환경B는 KS C CISPR 11 및 KS C CISPR 22의 기기클래스 B에 상응한다.

4.2 전기자기 내성(Immunity)

4.2.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

전자회로가 없는 기기는 정상사용 상태에서 전기자기 방해에 민감하지 않으므로, 전 기자기 내성시험이 필요하지 않다.

주) 여기에서 '전자회로'는 모든 소자가 수동소자(예를 들면, 다이오드, 저항, 배리스터, 커패시터, 서 지흡수기, 인덕터 등)만으로 되어있는 회로는 포함하지 않는다.

4.2.2 전자회로가 있는 기기

- (1) 전자회로가 있는 기기는 전기자기 방해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이 필요하다.
- (2) 이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은 5.를 참조한다.

4.3 전기자기 방출(Emission)

E - 131 - 2012

4.3.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

- (1)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의 경우, 전기자기 방해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폐작동 중에만 발생하며. 그 지속시간은 수 ms 정도이다.
- (2) 이러한 전기자기 방출의 주파수와 레벨,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저압설비의 통상적 인 전기자기 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기자기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충족된 다고 보아 별도로 검증할 필요는 없다.

4.3.2 전자회로가 있는 기기

4.3.2.1 고주파 방출 허용 기준

- (1) 전자회로가 있는 기기(예; 전원공급장치, 마이크로프로세서 등)는 지속적으로 전기자기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.
- (2) 이러한 전기자기 방출은 환경 A 및 B에 대한 KS C CISPR 11에 근거해서 관련 제품 표준에 규정된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.
- (3) 이러한 시험은 제어 및/또는 보조회로가 9 版 보다 큰 기본 개폐 주파수를 갖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을 때만 필요하며, 제품 표준에서 시험방법을 규정하여야 한 다.

4.3.2.2 저주파 방출 허용 기준

- (1) 저주파수의 고조파를 발생하는 기기에 적용하는 경우, KS C IEC 61000-3-2(전기자기 적합성(EMC) 제3-2부: 한계값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(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 A 이하))를 적용한다.
- (2) 저주파수의 전압변동(voltage fluctuation)을 발생하는 기기에 적용하는 경우, KS C IEC 61000-3-3(전기자기적합성(EMC) 제3-3부: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한계값(상당 16A 이하))을 적용한다.

E - 131 - 2012

5. 전기자기 내성시험

5.1 일반사항

- (1) 방출 및 내성시험은 형식시험으로, 제조자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용 및 환경 모두를 대표하는 조건에서 실시한다.
- (2) 시험은 전기자기 적합성(EMC) 표준에 따라 실시하되, 제품의 성능기준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시험조건(예; 외함의 사용)과 추가 방법(예; 지속시간의 적용)은 제품 표준에 따른다.

5.2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

시험이 필요하지 않다(4.2.1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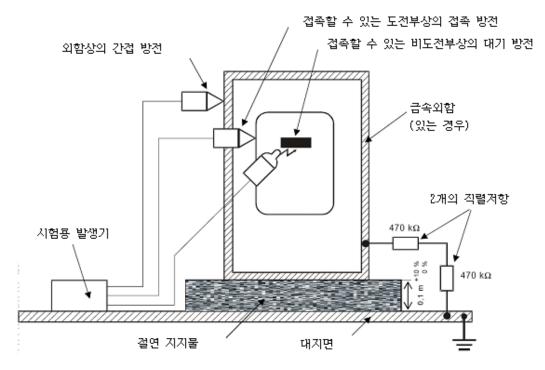
5.3 전자회로가 있는 기기

5.3.1 일반사항

- (1) 모든 구성품이 수동소자로 되어 있는 회로를 이용하는 기기는 시험할 필요가 없다.
- (2) 성능 기준은 관련 제품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<표 1>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5.3.2 정전기 방전

- (1) 제품 표준에 다양한 시험 레벨이 주어지고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표 1>의 시험레벨로 KS C IEC 61000-4-2(전기자기 적합성(EMC) 제4-2부: 시험 및 측정기술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)에 따라 시험한다. 시험은 펄스 사이의 최소시간 간격을 1초로 하여 각 측정점에서 10회 반복 실시한다.
- (2) 시험장치의 구성은 <그림 2>에 따른다.



<그림 2> 정전기 방전내성의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의 구성 (KS C IEC 60947-1의 그림 18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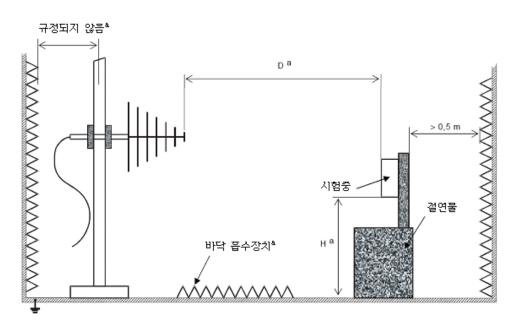
5.3.3 방출 고주파 전자계

- (1) 제품 표준에 다양한 시험 레벨이 주어지고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표 1>의 시험레벨로 KS C IEC 61000-4-3(전기자기적합성(EMC) 제4-3부: 시험 및 측정기술 방출 무선주파수 전기자기장 내성시험)에 따라 시험한다.
- (2) 시험장치의 구성은 <그림 3>에 따르되, 시험은 두 단계, 즉, 주파수 전범위에 걸쳐 시료의 의도하지 않은 작동에 대하여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(단계 1), 이산 주파수 에서 시료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해 시험하는 두 번째 단계(단계 2)로 실시한다.
- (3) 단계 1에서, 주파수는 KS C IEC 61000-4-3의 8에 따라 80~100 Nb, 그리고 1,400~2,000 Nb의 범위에 걸쳐 조사(sweep)한다. 각 주파수에 대한 진폭 변조 반송자의 유지시간은 관련 제품 표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, 50~1,000 ms 사이에 있어야 하고, 단계 크기는 이전 주파수의 1 %이어야 하며, 실제 유지시

E - 131 - 2012

간을 시험성적서에 기술한다.

(4) 단계 2에서, 이산(discrete) 주파수에서 기능적인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은 해당 제품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.



^a IEC 61000-4-3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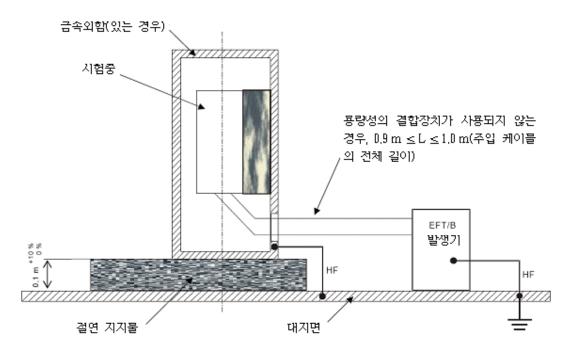
<그림 3> 고주파 전자계 내성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의 구성 (KS C IEC 60947-1의 그림 19 참조)

5.3.4 전기적 급과도/버스트(EFT/B)

- (1) 제품표준에 다양한 시험레벨 및/또는 반복율이 주어져 있고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표 1>의 시험레벨로 KS C IEC 61000-4-4(전기자기적합성(EMC)-제4-4부:시험 및 측정기술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)에 따라반복율 5 klb에서 실시한다.
- (2) 시험장치의 구성은 신호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에 대해 <그림 4>에 따른다.
- (3) 신호포트에 대한 시험은 접속 리드선을 용량성 결합장치에 위치시키고, EFT 발

E - 131 - 2012

생기와 용량성 결합장치 사이의 전체 케이블 길이는 최대 1 m로 한다.



HF: 고주파 접속

<그림 4> 전기적 급과도/버스트 내성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의 구성 (KS C IEC 60947-1의 그림 20 참조)

5.3.5 서지

- (1) 시험은 <표 1>의 시험레벨로 KS C IEC 61000-6-2(전기자기 적합성(EMC) 제6-2부: 일반기준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)의 표 2 및 표 3의 주석^d를 고려하여 KS C IEC 61000-4-5(전기자기적합성(EMC) 제4-5부: 시험 및 측정기술 서어지 내성시험)에 따라 시험한다.
- (2) 정극성과 부극성의 펄스를 인가하되 그 위상각은 0°, 90° 및 270°로 한다.
- (3) 각각의 극성 및 위상각에서 5개의 연속된 펄스를 인가하여 2개의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은 대략 1분으로 한다.
- (4) 3상 기기가 각 상에 동일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, 시험은 1상에만 한다.

E - 131 - 2012

<표 1> 전기자기 적합성(EMC) 시험 - 내성((KS C IEC 60947-1의 표 23 참조)

시험의 종류 및 관련 표준	요구되는 시험 레벨		
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KS C IEC 61000-4-2	8 kV/기중방전 또는 4 kV/접촉방전		
고주파 방출 내성시험 (80 版 ~ 1 없 및 1.4 版 ~ 2 版) KS C IEC 61000-4-3	10 V/m		
급과도 버스트 내성시험 KS C IEC 61000-4-4	2 kV/ 5 kbz(전원 포트), 1 kV/ 5 kbz(신호 포트)		
1.2/50 μs - 8/20 μs 서지 내성시험 ^a KS C IEC 61000-4-5	2 kV(선-접지간) 1 kV(선간)		
고주파 전도 내성시험 (150 版 ~ 80 版) KS C IEC 61000-4-6	10 V		
상용주파 자계 내성시험 ^b KS C IEC 61000-4-8	30 A/m		
순간 전압강하 내성시험 KS C IEC 61000-4-11	클래스 2 ^{c, d, e} 0% 감소 (0.5 사이클) 0% 감소 (1 사이클) 70% 감소 (25/30 사이클)	클래스 3 ^{c, d, e} 0% 감소 (0.5 사이클) 0% 감소 (1 사이클) 40% 감소 (10/12 사이클) 70% 감소 (25/30 사이클) 80% 감소(250/300 사이클)	
순간 전압정전 내성시험 KS C IEC 61000-4-11	클래스 2 ^{c, d, e} 0% 감소(250/300 사이클)	클래스 3 ^{c, d, e} 0% 감소(250/300 사이클)	
전원 고조파 내성시험 KS C IEC 61000-4-13	요구사항 없음 ^f		

a 24 V 이하의 정격전압을 갖는 포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

클래스 3는 산업 환경에서 공장내의 결합에만 적용한다. 이 클래스는 대부분의 부하가 콘버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, 용접기가 있는 경우, 대형 모터가 자주 기동하 거나 부하가 빠르게 변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.

제품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기술해야 한다.

° 사선(/) 앞에 있는 값은 50 Hz에 대한 값이고, 뒤에 있는 값은 60 Hz에 대한 값이다.

^f 시험 레벨을 검토 중임

b 상용주파 자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((KS C IEC 60947-1의 8.4.1.2.7 참조).

[°] 주어진 백분율은 정격사용전압의 백분율을 의미한다. 즉, 0%는 0V를 의미한다.

d 클래스 2는 공통 결합점(points of common coupling) 및 일반적으로 산업 환경에서 공장내의 공통 결합점(in-plant points of common coupling)에 적용한다.

KOSHA GUIDE E - 131 - 2012

<표 2> 전기자기 방해 허용기준(KS C IEC 60947-1의 표 24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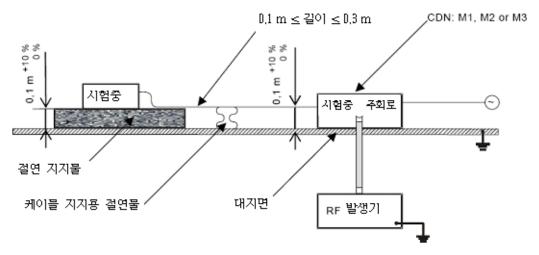
7 13	허용 기준(시험 중의 성능 기준)			
구 분	A	В	С	
전체 성능	작동 특성에 현저한 변화 가 없음. 의도된 대로의 작동	자기 회복이 가능한 정 도의 일시적인 성능의 저하나 상실	조작자의 조정이나 시 스템 리셋을 필요로 하 는 정도의 일시적인 성 능의 저하나 상실 ^a	
전원 및 제어회로 의 작동	작동불량이 없음.	자기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성능 의 저하나 상실 ^a	조작자의 조정이나 시 스템 리셋을 필요로 하 는 정도의 일시적인 성 능의 저하나 상실 ^a	
표시 및 제어 패 널의 작동	정보 표시에 변화가 없음. LED 빛 세기의 약간의 변 동 또는 문자의 약간의 움직임.	정보의 눈에 보일 만한 일시적인 변화 또는 일 시적인 상실 불필요한 LED 불빛	표시 중지 또는 영구적 인 손실 잘못된 정보 및/또는 허 용되지 않은 작동모드 자기 회복 불가능	
정보처리 및 감지기능	외부장치와의 통신 및 데 이터 교환이 방해받지 않 음.	내부 및 외부 장치의 오류보고와 함께, 통신 이 일시적으로 장해를 일으킴.	정보의 잘못된 처리 데이터 및/또는 정보의 손실 통신 오류 자기 회복 불가능	
^a 특정 요구사항이 제품표준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.				

5.3.6 고주파 전자계에 의한 전도 방해

- (1) 시험은 <표 1>의 시험 값으로 KS C IEC 61000-4-6(전기자기적합성(EMC)-제 4-6부: 시험 및 측정 기술-전기자기장 전도 내성시험)에 따라 실시한다. 시험품을 대기에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.
- (2) CDN(coupling-decoupling network) M1, M2 또는 M3를 이용해서 전원선 상에 전자계 방해파를 주입한다.
- (3) 신호선에는 CDN을 통해 전기자기 방해파를 인가하되, 적절한 CDN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E.M. 클램프가 사용될 수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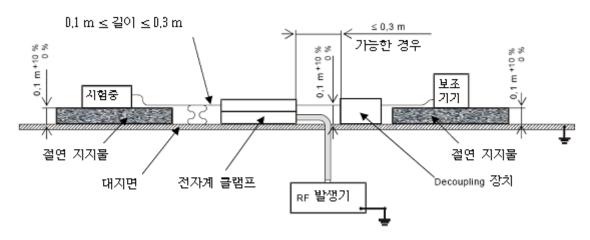
E - 131 - 2012

- (4) 특별한 시험장치 구성은 <그림 5> 또는 <그림 6>에 따르되, 이를 시험성적서에 상세히 기술한다.
- (5) 시험은 두 단계, 즉, 주파수 전범위에 걸쳐 시험품의 의도하지 않은 작동의 내성에 대해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(단계 1), 이산 주파수에서의 시료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해 시험하는 두 번째 단계(단계 2)로 실시한다.
- (6) 단계 1에서, 주파수는 KS C IEC 61000-4-6의 8에 따라 150~80 Mb의 범위에 걸쳐 조사한다. 각 주파수에 대한 진폭 변조 캐리어의 유지시간은 제품표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500~1,000 ms 이어야 하고, 단계 크기는 이전 주파수의 1%이어야 하며, 실제 유지시간을 시험성적서에 기술한다.
- (7) 단계 2에 있어서 이산 주파수에서 기능적인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은 해당 제품표준에 따라 실시한다.



- 주) CDN M1 대신에, CDN M2나 M3가 사용될 수도 있다. 이 경우에 두 개나 세 개의 연결선이 시험품의 동일한 지점에 접속되어야 한다.
- <그림 5> 전원선상의 고주파 전자계에 의한 전도방해 내성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의 구성 (KS C IEC 60947-1의 그림 21 참조)

KOSHA GUIDE E - 131 - 2012



<그림 6> CDN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, 신호선 상의 고주파 전자계에 의한 전도방해 내성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의 구성(KS C IEC 60947-1의 그림 22 참조)

5.3.7 상용주파 자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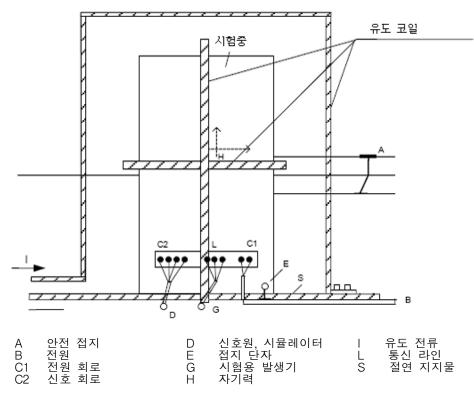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시험은 해당 제품표준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상용주파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만 적용한다.
- (2) 시험방법은 KS C IEC 61000-4-8(전기자기적합성(EMC)-제4장:시험 및 측정기술 -제8부:전원주파수 자계내성시험)에 따르되 시험품이 전용 외함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, 시험은 시험품을 대기상태에서 실시한다. 시험레벨은 <표 1>에 따르되, 세 수직축 방향으로 시험품에 자계를 인가한다(<그림 7> 참조).

5.3.8 순간 전압강하 및 순간 정전

- (1) 이 시험은 해당 제품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순간 전압강하 및 순간 정전의 경우에 원하지 않는 작동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는 기기에만 적용한다.
- (2) 시험은 KS C IEC 61000-4-11(전기자기적합성(EMC) 제4-11부: 시험 및 측정 기술 전압강하,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)에 따른다. 시험품의 제조자가 규정하는데 따라 가장 짧은 전원케이블로 시험품을 시험용 발생기에 연결한다.

E - 131 - 2012

케이블 길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, 시험품의 사용에 적합한 가장 짧은 길이로한다. 시험 레벨은 <표 1>에 주어져 있고, 백분율은 정격사용전압의 백분율을 의미한다.



<그림 7> 상용주파 자계 내성 검증을 위한 시험장치의 구성 (KS C IEC 60947-1의 그림 23 참조)

6. 전기자기 방출

6.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

전자회로가 없는 기기에서 전기자기 방해는 주로 개폐작동 중에만 발생하며, 이때 발생하는 전기자기 방출의 주파수와 레벨,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저압설비의 통상적인 전기자기 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기자기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충족된다고 보아 별도로 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(4.3.1 참조).

E - 131 - 2012

6.2 전자회로가 있는 기기

전자회로가 있는 기기에서의 전기자기 방출 시험방법은 각각의 제품 표준에 따른다 (4.3.2 참조).